

SOFA 規定의 問題點과 改善論

(Problems and Suggestions of SOFA)

田 炳 龍
(Jun, Byung Ryong)

目 次	次
第一章 序 論	1. 問題點
第一. 研究의 目的	2. 改善論
第二. 研究의 範圍와 方法	第三章 刑事裁判權 條項
第三. 協定체결의 경위와 意義	第一. 序 言
第二章 勞務條項	第二. 問題點
第一. 序 言	第三. 改善論
第二. 고용과 해고	第四章 民事請求權 條項
1. 문제점	第一. 序 言
2. 개선론	第二. 問題點
第三. 정의조정	第三. 改善論
1. 問題點	第五章 結 論
2. 改善論	〈부 록〉
第四. 비상시의 특별조치	참고문헌, 각주
1. 問題點	國文要約
2. 改善論	英文要約
第五. KSC 지위협정	

第一章 序 論

第一. 研究의 目的

1953年 10月 1日 워싱턴에서 調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第4條에 의해서 美

國의 陸·海·空軍이 適合한 地位를 保全하며 한국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되어 兩國家間의 긴밀한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위 한미행정협정(正武명칭¹⁾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間의 상호방위조약 第4條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地位에 관한 協定)이 1966年 7月 9日에 서울에서 체결되고 1967年 2月 9日에 發效되게 됨에 따라 한국의 영토주권과 국가독립이 그만큼 더 존중 확보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발언권이 더욱 굳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한미행정협정이 重要部分에 있어서 국제법상 혹은 국내법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동안 18年の 세월이 흐름에 따라 發展된 대한민국의 現實과 맞지 않게 된 부분이 생겨서 이러한 點을 지적하고 그 改善論을 제안함으로써 우리의 實質의 權益을 도모함과 아울러 앞으로 한미관계를 한층 더 긴밀한 유대위에 결속시키는 토대가 되도록 하는 데에 本論文의 目的이 있다.

第二. 研究의 範圍와 方法

한미행정협정의 主要內安은 施設과 區域(條 2條 내지 第 6條), 接受國 法令의 존중과 出入國(第 7條, 第 8條), 通關과 關稅(第 9條), 課稅(第 14條), 勞務 및 物資調達(第 16條, 第 17條), 화폐와 우편(第 18條 내지 第 20), 刑事 및 民事裁判權(第 22條, 條 23條) 등이나, 모두 다 論議하자면 그 量이 지나치게 방대하므로 本論文에서는 그동안 가장 與件의 變化가 심하였던 勞動問題와 애초부터 가장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던 民刑事裁判權 문제에 對해서만 論議하고자 한다.

本論文의 研究方法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國內外 관계문헌과 통계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國際法理論과 外國例에 비추어 떠오르는 問題點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改善論을 여러 學者와 實務者의 意見을 參考하여 선형적인 方法으로 제시하는 技法을 取하였다.

1) 英文 正式명칭 :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간단히는 SOFA協定 또는 Status of Forces Agreement 라고 부른다).

第三. 協定체결의 경위와 意義

1. 協定체결의 경위

休戰後 미국군대는 1953년 10월 1일 와싱턴에서 署名되고 1954년 11월 17일 發效된 한·미間 상호방위조약 第4條에 의하여 外部의 무력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공동방위하기 위하여 相互 合意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토 안과 그 부근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에 앞서 1953년 8월 7일 방위조약 가조인시에 發表된 이승만·덜레스 공동성명에서 상호방위조약 發效 직후 미국군대 지위협정의 체결을 교섭하기로 合意한 이래 우리 政府의 꾸준한 교섭이 계속되었으나 別다른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後 한·미 양국이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한 것은 1962년 9월 20일 양국이 第1次 실무자회의를 再開한 때부터이며 1955년 5월에 「와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양국 대통령간의 회담에서 重要 미해결문제에 對한 원칙적인 합의를 본 後 계속하여 여러 차례 公式 혹은 비공식 교섭의 결과 담보상태에 있던 교섭은 급진전을 보아 1966년 7월 8일 개최된 第82次 실무자회담까지 무려 82회에 달하는 한·미간 교섭회의 끝에 마침내 현안이던 교섭에 매듭을 짓고 「던·러스크」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1966년 7월 9일 協定の 署名을 보게 되고 이듬해 2월 9일부터 發效되게 된 것이다.²⁾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양국간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이 협정을 촉구하는 국민여론이 비등하였고 大學生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위도 있었다. 또한 이 協定이 없었으므로 해서 억울하게 손해를 본 국민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비교적 훌륭한 協定이 나오게 되기까지는 당시 李東元 外務部長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勞力이 컸던 것이다.

2. 協定체결의 意義

한미방위조약은 한미군사유대의 핵심이며, 상호안전보장과 상호이익을 具體化한 동맹관계의 實體的 기초이다. 이 條約 第4條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本協定이다. 本協定은 한·미 양국간에 오랫동안 현안문제로 끌어 오던 교섭을 兩國이 전통적인 友好와 協助의 정신과 共同의 對共戰爭에서 과시했던 協同精神에 입각해서 完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키게 된 것을 우선

2) 대한민국 외무부, 한미행정협정해설, p.4.

外交的 成果라 할 것이다.

어떤 나라가 외국군대의 주둔이나 통과를 인정한 이상, 당연히 그 군대에 대하여 一定한 면제와 特權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確立된 국제법규 내지는 一般的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特權과 免除를 어느 정도의 限度內에서 인정할 것인가를 具體的으로 明白하게 規定하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³⁾

또한 이 協定이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政治安定과 立法·司法·行政等 各分野에 걸쳐 현저한 發展이 있어 國力伸張이 달성되었다는 것이 證明된 데에도 그 意義를 찾을 수 있겠다.⁴⁾

第二章 勞務條項

第一. 序 言

本條는 美國軍隊가 韓國 안에서 韓國人을 고용할 경우 그들에 對한 대우는 原則的으로 한국의 勞動法에 따라 規制 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러나, 美軍은 國際法上 국가기관의 하나로서 勞動關係에 있어서 한국법정이나 勞動委員會의 司法的인 決定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또 軍事目的遂行을 위하여 駐屯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알맞도록 規定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解放後 미군이 주둔한 當時부터 그들이 한국인 고용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들의 必要에 따라 직접 모집해 왔다. (직접고용제) 따라서, 勞務條項은 그러한 직접고용제를 토대로 편성한 체제가 되었으며 NATO協定, 美, 日協定, 아이스랜드 協定 등과 같이 간접고용제를 채택한 종전의 서구적 協定體制와 根本的으로 다르다.⁵⁾

3) 황성수, 한미행정협정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p.10. 友石大 文理大·法經大 論文集, 第2輯, 1969年.

4) 대한민국 외무부, 前揭書 p.7.

5) NATO協定 第9條 第4項:

④군대 또는 군속의 現地 民間勞務에 對한 需要는 이에 相當하는 接受國의 需要와 同一한 方法으로 接受國當局의 協助를 얻어 直接 紹介所를 通하여 充足한다. 고용 및 勞

外交的 成果라 할 것이다.

어떤 나라가 외국군대의 주둔이나 통과를 인정한 이상, 당연히 그 군대에 대하여 一定한 면제와 特權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確立된 국제법규 내지는 一般的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特權과 免除를 어느 정도의 限度內에서 인정할 것인가를 具體的으로 明白하게 規定하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³⁾

또한 이 協定이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政治安定과 立法·司法·行政等 各分野에 걸쳐 현저한 發展이 있어 國力伸張이 달성되었다는 것이 證明된 데에도 그 意義를 찾을 수 있겠다.⁴⁾

第二章 勞務條項

第一. 序 言

本條는 美國軍隊가 韓國 안에서 韓國人을 고용할 경우 그들에 對한 대우는 原則的으로 한국의 勞動法에 따라 規制 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러나, 美軍은 國際法上 국가기관의 하나로서 勞動關係에 있어서 한국법정이나 勞動委員會의 司法的인 決定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또 軍事目的遂行을 위하여 駐屯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알맞도록 規定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解放後 미군이 주둔한 當時부터 그들이 한국인 고용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들의 必要에 따라 직접 모집해 왔다. (직접고용제) 따라서, 勞務條項은 그러한 직접고용제를 토대로 편성한 체제가 되었으며 NATO協定, 美, 日協定, 아이스랜드 協定 等과 같이 간접고용제를 채택한 종전의 서구적 協定體制와 根本的으로 다르다.⁵⁾

3) 황성수, 한미행정협정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p.10. 友石大 文理大·法經大 論文集, 第2輯, 1969年.

4) 대한민국 외무부, 前揭書 p.7.

5) NATO協定 第9條 第4項:

④군대 또는 군속의 現地 民間勞務에 對한 需要는 이에 相當하는 接受國의 需要와 同一한 方法으로 接受國當局의 協助를 얻어 直接 紹介所를 通하여 充足한다. 고용 및 勞

간접고용제를 채택한 國家間的 協定은 고용주가 파견국 등이 아니라 接受國 政府 혹은 그 代理者가 되며 勞使關係는 自國法令에 의거하여 規制된다. 뿐만 아니라 보수도 自國政府로부터 받고 그 政府는 파견군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形式을 取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우리나라가 採擇한 직접고용제는 파견군이 그들의 고용원을 직접 고용하는 制度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이태리, 필리핀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⁶⁾

이 경우 단체교섭과 團體行動權의 行使는 고용주인 美軍에 對한 直接行動이며 쟁의행위는 파견국과 접수국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접수국이 쟁의에 있어서 直接當事者가 아니므로 접수국 政府는 第3者의 立場에서 公正하게 介入하여 고용원의 利益向上을 도모할 수 있고, 고용원 모집경비 부담을 덜 수 있다.⁷⁾

第二. 고용과 해고

本協定 第17條의 第1項에서 「고용주」와 「고용원」의 定義에 對하여 「고용주」는 미국 군대는 물론 미국의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하였으며 제 15 조의 초청계약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고(第1項(가)), 「고용원」은 上記 고용주가 채용한 한국국적의 民間人으로 하되 다만 그러한 民間人 中에서 한국노무단의 구성원과

動의 條件 特히 勞賃, 追加手當 및 勞動者의 保護를 위한 條件은 接受國의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군대나 군속이 고용한 前記 民間勞動者는 如何한 目的을 위하여서도 軍隊나 軍屬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아이슬랜드協定에 對한 부속서 第6條 第4項 :

④ 美合衆國은 本協定에 따른 事業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利用할 수 있는 有能한 아이슬랜드의 民間人을 採用할 것을 희망한다. 이 아이슬랜드의 民間人을 채용하는데 對하여 아이슬랜드가 同意한 경우에도 그 채용은 아이슬랜드가 指定한 代表者를 通하여 그의 원조를 얻어 實施한다. 고용과 作業에 관한 條件 特히 追加手當 및 勤勞者의 保護를 위한 諸條件은 아이슬랜드의 法律과 慣行에 定한 바에 따른다.

6) 의무부 편, 한미행정협정해설, 서울, 1967, pp.55-56.

7) 오스트레일리아 協定 第15條 :

「합중국군대의 民間人 勞動者의 現地需要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군대와 同一한 方法으로 이를 充足하며 오스트레일리아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援助를 얻어 充足한다.」

미군군속 혹은 그 가족이 個人資格으로 고용한 家事使用人は 本條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除外되었다. <第1項(나)>

군속은 설사 民間人이라도 主로 美國人이므로 그의 使用과 고용조건은 한국 勞動法令의 規制를 받지 않는다.

고용주는 第2項에 의하여 그들의 고용원을 직접 모집하고 고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국정부 모집사무기관을 利用할 수도 있다.

해고에 있어서는 正常的인 경우 한국법에 입각해서 行하는 것이 原則이나 美國政府는 特別히 美軍의 軍事上 必要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合意議事錄 第2項 후단)

고용과 해고에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몇가지 問題點과 改善點은 다음과 같다.

1. 問題點

(가) 本條는 現行 우리 勞動關係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勞動者와 使用主의 개념에 비할 때 그 적용범위가 制限되어 있다.

(나) . 本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면 고용주는 自由롭게 그 종업원을 모집하며, 또한 그 作業을 管理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同條 第3項에 의하면 고용주인 美軍當局은 同協定의 규정과 군사상 必要에 배치되지 않는 한 勞動條件, 재해보상 및 勞使關係의 모든 事項에 對하여 한국 노동법에 따른 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 계약에 관한 事項은 全然 明示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明示하고 있는 근로계약에 관한 規定과 재해보상에 관한 規定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規定의 適用이 있게 된다.

그런데, 고용주는 軍事上 必要에 따라 언제든지 一方的으로 고용관계를 斷絶시킬 수 있도록 된 것은 문제이다.

2. 改善論

(가) . 本條의 適用範圍를 우리 現行 勞動法의 水準에도 擴張하고 K.S.C 團員에게도 原則的인 適用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나) . 일단 고용관계가 수립되면 不當하게 차별 대우 하거나 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고용주의 一方的 해고 가능 要件을 좀더 具體的으로 規定하고, 또 부득이 해고하는 경우에도 신중한 절차와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충분한 手當을 支給하도록 規定해야 할 것이다.

第三. 爭議調整

本條 第4項 (가)는 勞動爭議를 해결하는 節次를 規定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勞動爭議調程法이 쟁의조정제에 있어서 官權發動, 司法的 權限의 行使를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權限行使가 美軍에 그대로 適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規定된 것이다.

즉, 고용주와 고용원(혹은 고용원 단체)間的 노동쟁의는 먼저 不評處理節次 또는 協議會 심의절차를 거치게 하고, 이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①한국노동청에 그 조정을 위하여 회부하고 ② 이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合同委員會에 회부되 合同委員會는 그가 감독하는 分科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合同委員會의 決定은 拘束力이 있다.

이러한 規定에 따라 合同委員會의 決定에 불복하거나 上記한 쟁의해결절차가 進行中일 때에는 團體行動權을 行使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 경우 團體行動權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그러한 團體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한 고용원을 해고할 수 있는 權限을 갖게 된다. 그러나, 70日이 지나도 쟁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團體行動權이 부활된다.

以上 概觀한 노동쟁의에 관하여 그 問題點과 改善論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問題點

(가) 일단 사용자와 피용자 및 그들의 團體間에 주장의 不一致가 發生하여 爭議狀態가 야기되면 無條件 우리 勞動廳에 그 해결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勞動廳에서의 조정에는 그 기간이 制限되어 있지 않아서 無限定하게 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

(나) 合同委員會에 회부된다고 해도 적어도 70日間은 實力行使를 할 수 없게 되며, 또 分科委員會가 조정에 失敗하는 경우에는 合同委員會가 강제적 조정을 하게 되고 그 決定은 無條件 拘束力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피용자 단체는 단체적 實力行使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다) 合同委員會가 美軍과 한국정부 代表 1名씩으로 구성됨으로 고용원의 意思는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다. 더우기 合同委員會가 강제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행사가 단순히 「分科委員會 조정의 失敗」라는 條件下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정의 강제권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원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조정제도는 커다란 결함이 있다 할 것이다.

(라) 國內 一般爭議는 勞動委員會의 조정에 勞動組合이 복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복할 수 있고 그 救濟方法으로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本協定의 경우에는 이러한 길이 막혀 있다.

(마) 소위 하우스 보이 등 宿舍從業員은 本協定上 美軍의 고용원으로서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으므로 이들에 對한 美軍의 不當勞動行爲는 勞動廳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없고 한국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2. 改善論

(가) 勞動廳에서의 조정기간을 새로이 定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며, 이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근로자에게 不利할 것이고 또 너무 짧으면 조정 必要한 시간이 確保될 수 없으므로 대략 20~30日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 본다.

(나) 우리나라 노동쟁의조정법에 있어서는 同法 第16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一般事業에 있어서는 30日, 公益事業에 있어서는 40日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⁸⁾ 이 규정에 對하여, 냉각기간이 勞使의 실제 경제상의 요청에 비하여 너무 길다는 이유로 反對하는 學者도 있고, 노동조합측에서도 냉각기간으로 因한 쟁의행위의 制約이 너무 크다고 不平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本協定에 규정된 70일간의 냉각기간을 20~30日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合同委員會의 강제적 조정결과에 對한 拘束力이 無條件인 점도 어느정도 具體的 妥當性을 가질 수 있도록 制約해야 할 것이다.

(다) 國內의 일반쟁의를 조정하는 조정위원회가 公益, 勞, 使의 3者의 代表로 구성되며 3者가 모두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는 點을 고려한다면 한미 合同委員會에도 勞動者代表를 參加시켜야 할 것이다.⁹⁾

(라) 國內 一般爭議와 마찬가지로 韓美合同委員會의 決定에 대해서도 勞動者의 異議提起 및 救濟方法을 規定해야 한다고 본다.

(마) 하우스 보이 등 宿舍從業員이라 할지라도 職種이 다를 뿐 美軍業務를 지원하고 있음은 다를 바 없으며 어느 특정직종에만 勞動權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숙사종업원도 미군종업원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8) 勞動爭議調整法 第14條

9) 金致善: 韓美行協과 勞務條項研究, Fides, 1967.2. p.31.

第四. 非常時의 特別措置

戰爭 혹은 敵對行爲 또는 그에 準하는 國家非常時에는 한국정부가 取하는 비상조치에 따라 本條의 適用限界를 制限하기로 되어 있고 이 경우 그 制限에 있어 美軍當局과 協議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경우에 政府는 勞動力 配定에 있어서 美軍에게 韓國軍에 있어서와 같은 特權을 부여한다. 또한 미군 고용원에 對한 特別措置로서 戰時에 美軍에게 必要 不可缺한 技術을 가진 고용원에 대해서는 한미양측의 相互協議下에 兵役義務 혹은 其他 役을 면제해 준다.

1. 問題點

國家非常時에 한국정부가 取하는 비상조치에 準하여 本條의 適用을 어느 정도 制限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나 그 範圍가 限定되어 있지 않아 無制限한 制約이 可能하다.

2. 改善論

國家非常時에 制限되는 本條의 適用範圍를 明確히 하여, 不必要한 對立을 事前에 防止해야 할 것으로 본다.

第五. KSC 地位協定

한국노무단(Korean Service Corps)은 SOFA協定 第17條 第1項 (나) 但書에 의해 同協定의 適用이 除外되고 있다. 그 대신 1967年 3月 10부터 發效되는 韓美間韓國勞務團地位協定이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 K.S.C協定은 全文 14個條 및 合意諒解事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內容은 第1條 고용주와 고용원의 定義, 第2條 KSC의 機能, 第3條 고용방법, 第4條 勞動條件, 第5條 勞動組合, 第6條 爭議解決節次, 第7條 請求權, 第8條 所得源泉課稅, 第9條 合同委員會의 구성, 第10條 非常措置, 第11條 國際法上 免除로 되어 있다.

1. 問題點

(가) K.S.C協定 第2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K.S.C기능은 수송, 야전, 측성, 도로건설, 補給所의 운영 등인데 이는 우리 근로기준법 第43條의 유해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에 관해 特別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고용주의와 K.S.C 團員間的 고용계약에 對해서는 同協定에 全然 明示 하지 않고 있다.

(다) K.S.C 協定에서는 不當勞動行爲가 있었을 때 그에 對한 구제조치가 規定되어 있지 않다.

(라) K.S.C 協定 第 5 條에서 한국정부는 한국법령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의 구성과 해체에 關하여 美軍에 通告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SOFA 協定 第 17 條 合意議事錄 第 5 項에서는 勞動組合은 그 目的이 한미 상호방위에 反하지 않는 한 고용주가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신고제가 아니라 승인제 또는 허가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2. 改善論

(가) 우리 근로기준법 第 43 條는 「지하작업 其他 大統領令으로써 定한 有害危險作業은 1 日에 6 時間, 1 週日에 36 時間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1 日 2 시간, 1 주일 12 시간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K.S.C 의 기능 中 유해위험작업에 속하는 것을 분류하여 규정하고 이에 對해 우리 근로기준법 第 43 條에 준하는 규정을 두어 별도 취급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나) 고용주의와 K.S.C 團員間的 고용계약에 關해서 우리 근로기준법 第 2 章(근로계약), 第 8 章(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規定의 準用을 明示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不當勞動行爲에 關해서 우리 勞動組合法 第 39 條(不當勞動行爲禁止, 그 類型), 第 40 條(救濟申請), 第 41 條(調查等), 第 42 條(救濟命令), 第 43 條(救濟命令의 確定), 第 44 條(救濟命令등의 效力)와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라) 勞動組合의 設立에 있어서도 原則적으로 申告制로 하되, 한미 상호방위에 反한다고 인정될 때 一定한 절차를 거쳐 인정치 않도록 하고, 이 결정에 對해서도 적절한 구제수단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第三章 刑事裁判權 條項

第一. 序 言

대체로 외국주둔에 對한 接受國의 재판권에 관한 原則은 주둔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토국인 接受國이 同意하는 限度內에서 파견국이 그 군대구성원에 대한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行使 할 수 있다는 것이 一般 國際法上의 原則이다.¹⁰⁾

영토국은 영토주권의 당연한 權利로서 그 영토내에서의 一般的인 司法上의 主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지는 것이며 이에 對한 어떠한 例外나 制約은 접수국의 明示的 同意 또는 合意가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一國에 주둔하는 外國軍隊는 一定한 條約上 또는 其他의 任務遂行이라는 주둔목적을 效果的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군대의 軍기질서를 유지확보하기 위하여 그 지휘관이 예하장병에 대하여 一定한 범위의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함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¹¹⁾

형사재판권에 관한 條項은 SOFA協定 第 22 條에 規定되어 있는데, 特記할 것은 우리나라가 第 1 次的 재판권의 행사와 표기를 비롯한 其他 諸條項에 있어서 NATO가맹국인 네델란드, 그리이스의 協定, 그리고 1965년 8월 10일 美國·비올빈 間 改正된 美·비올빈 基地協定の 刑事裁判權條項 및 니카라구아協定 등 諸協定の 형태를 채택하게 된 것은 交渉上의 큰 所得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군이 우리가 가지는 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오는 경우에는, 국제적 先例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現實적 관계를 고려하여 재판권을 미군에 넘겨 줄 것을 決定하는 權限을 가지게 되었다.

미군은 원칙적으로 재판권 被害자를 미군의 구금시설에 구금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관계당국의 범죄수사 또는 재판진행을 위하여 모든 可能的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의 安全에 관련된 被害자는 대한민국이 구금하는 權利를 가지게 되었다.

10) Department of Justice, International Law and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Supplementary Hearings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83rd cong., 1st Sess. 38. 1953.

11) Edwin G. Schuck, Concurrent Jurisdiction under the NATO Status Forces Agreement, 57. Columbia Law Review, 355, 1957.

검찰청의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요령¹²⁾에 있어서도 구속지휘품신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그 처리요령을 밝히고 있다. 즉, ① 우리나라 安企에 관한 범죄 및 重要事件 現行犯 체포시는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拘束 與否 指示 받음. ② 現行犯이 아닌 우리나라 安企에 관한 범죄 및 重要犯罪를 犯한 美軍人을 체포, 구금코저 할 때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에 관한 合意議事錄에서는 ①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 계엄지역에서는 미군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고, ② 군대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對한 우리나라 재판권이 이들이 한국영토 밖에서 犯한 罪에 對하여 미치지 않는다.¹³⁾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記述한 刑事裁判權條項의 問題點과 改善論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第二. 問題點

1. 韓國에 여행중에 있는 美國軍

例컨데 서독에 주둔하는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犯行했을 경우에 協定文에 國文으로는 「한국영역 안에 있는 미군」으로 表示되어 있고, 英文으로는 「When in the territory of Korea」라는 式으로 되어 있으므로 얼핏 보면 미군이 한국 내에서 犯行했을 때에는 주둔군이건 비주둔군이건 모두 해당되는 것처럼 보여, 그 적용범위가 모호하다.

2. 通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적을 가진 民間人과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에 對한 適用問題.

本協定에서 軍屬이라 함은 미국 국적을 가진 民間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고용되거나 미군과 함께 근무하거나 또는 同伴하는 者를 말하나, 미국 국적을 가진 者라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者와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은 비록 그들이 미군에 고용된 경우라도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이나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아서 問題이다.

12) 法檢察 821-9059, 69.8.22 字 公文,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요령.

13) 우리 刑法 第5條는 대한민국 영토 外에서 一定한 犯罪를 犯한 外國人에 對하여서도 우리 刑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合意議事錄 규정은 이에 對한 例外를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3. 미국 국적을 取得하지 못한 美軍의 부인.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이므로 혼인을 한 女人은 남편의 국적을 取得하나, 미국은 그렇지 않고 혼인을 하면 처로서의 신분은 획득하나 미국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 가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한국 女人의 남편이 계속 한국에 주둔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남편이 他國으로 가고 부인만 市民權을 얻지 못한채로 남아 있는 경우에 미국에서는 군인, 군속의 가족으로서 대우를 하지 않는 수가 있다.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問題라 아니할 수 없다.

4. 미국의 安全에 對한 犯罪

미국의 安全에 對한 犯罪은 미군의 전속적재판권에 속하는 범죄로서 규정된 反面에 또한 第1次的 裁判權에 속하는 犯罪로서도 規定되어 있으므로 이 兩者의 區別이 모호하다.

우리나라 美軍에 의한 犯罪發生 現況¹⁴⁾

(件數)

類 年 型 度	1962	66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도 범	0	8	56	47	31	31	46	44	41	90	65	39	58	74	87	72
폭 력 범	171	137	419	511	484	372	408	421	363	401	306	221	204	309	416	380
성 범 죄	0	3	0	5	18	23	26	17	7	8	7	6	7	6	7	11
지 능 범	0	0	10	16	6	16	35	13	10	18	24	31	21	16	10	25
과 실 범	31	22	281	478	456	439	595	586	512	487	534	322	269	352	388	453
출 입 국 법	0	0	0	0	0	0	0	0	0	0	0	0	1	0	3	0
경 제 사 범	0	1	0	1	7	3	5	30	42	19	6	5	2	21	4	15
보 전 사 회 범	0	0	0	26	76	83	51	38	22	59	56	18	10	18	5	6
기 타	16	4	333	2	24	88	52	66	23	25	32	70	55	59	63	66
합 계	218	172	1,100	1,086	1,102	1,055	1,218	1,215	1,020	1,107	1,031	712	627	855	1,021	1,028

14) 警察統計年報, 1962, 1966, 1971-1973, 治安局, 1974-1984, 治安本部

第三. 改善論

1. 韓國에 여행중에 있는 美國軍

한국에 여행중에 있는 미국군에 對해서는 공무여행중이거나 공무휴가명령법에 의하여 한국에 여행중인 때에는 本協定에 규정한 형사재판권에 속하고 사무여행 중인 외국주재미군은 除外되는 것으로 明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通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민간인과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이들은 비록 미군에 고용되어 있더라도 軍屬의 개념에서 除外되고 따라서 미군 당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재판권에만 복종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 點을 分明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초청계약자에 對해서는 한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되, 체포구금과 자유형의 집행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權利에 관한 규정(합의의사록 규정 포함)은 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미군의 부인

이러한 경우 한국이 재판권을 가질 것인지 혹은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가질 것인지에 관해 統一된 規定을 두어 法的 安定性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미국의 安全에 對한 犯罪

本條 第2項과 第3項을 비교검토해 보면, 第3項의 第1次的 재판권에 있어서는 「오로지」 미국의 安全에 對한 범죄라고 規定한 것으로 보아서 「오로지」라는 文句에 강한 뜻이 있으므로 한국·미국의 兩國이 아닌 오로지 미국의 安全에 對한 犯罪를 意味하는 것이며, 第2項의 전속적재판권에 있어서는 미국의 安全에 對한 범죄 中에서 대한민국의 法令에 의해서는 處罰할 수 없으나 미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범죄만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점을 分明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第四章 民事請求權 條項

第一. 序 言

이 條項은 原則적으로는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에 對한 대한민국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나, 民事事件 中에는 주한미군의 구성원이

第三. 改善論

1. 韓國에 여행중에 있는 美國軍

한국에 여행중에 있는 미국군에 對해서는 공무여행중이거나 공무휴가명령법에 의하여 한국에 여행중인 때에는 本協定에 규정한 형사재판권에 속하고 사무여행 중인 외국주재미군은 除外되는 것으로 明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通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민간인과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이들은 비록 미군에 고용되어 있더라도 軍屬의 개념에서 除外되고 따라서 미군 당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재판권에만 복종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 點을 分明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초청계약자에 對해서는 한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되, 체포구금과 자유형의 집행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權利에 관한 규정(합의의사록 규정 포함)은 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미군의 부인

이러한 경우 한국이 재판권을 가질 것인지 혹은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가질 것인지에 관해 統一된 規定을 두어 法的 安定性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미국의 安全에 對한 犯罪

本條 第2項과 第3項을 비교검토해 보면, 第3項의 第1次的 재판권에 있어서는 「오로지」 미국의 安全에 對한 범죄라고 規定한 것으로 보아서 「오로지」라는 文句에 강한 뜻이 있으므로 한국·미국의 兩國이 아닌 오로지 미국의 安全에 對한 犯罪를 意味하는 것이며, 第2項의 전속적재판권에 있어서는 미국의 安全에 對한 범죄 中에서 대한민국의 法令에 의해서는 處罰할 수 없으나 미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범죄만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점을 分明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第四章 民事請求權 條項

第一. 序 言

이 條項은 原則적으로는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에 對한 대한민국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나, 民事事件 中에는 주한미군의 구성원이

나 고용원 또는 其他 미군당국에 의하여 일어난 손해에 對한 배상청구가 주가 될 것이므로, 本條에서는 주로 이러한 청구권의 해결절차를 仔細히 規定하고 있다. 本條에 따르면 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은 一般的으로 한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한다.¹⁵⁾

本條項은 청구권이 發生될 경우를 加害者의 公務執行與否 또는 其他 各基準에 의하여 分類하고, 이에 적합한 청구권의 해결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第3者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民事訴訟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최종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NATO 諸國間의 協定, 美·日協定 및 美·濠協定과 같은 類型이다.

이러한 民事裁判權 條項의 問題點과 改善論을 以下에서 살펴 본다.

第二. 問題點

1. 判決의 執行保障

이 協定에서는 被害者가 最終적으로 加害者를 相對로 하여 한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국법원의 判決이 내려진 경우에 그 判決의 執行이 保障되어 있지 않아, 實質的인 被害回復의 手段이 確保되어 있지 않은 點은 問題이다.

非公務中の 不法行爲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일단 한국법원의 判決이 내려진 경우에 그 判決의 執行에 當하여 한국측은 그 判決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加害者의 재산이 미군사용의 구역 및 시설내에 들어 있는 경우, 그의 사유동산에 한하여 주둔국측의 協力을 구할 수 있는데 그치므로 비록 적법하고 타당하게 배상액이 査定, 決定되었다 할 지라도 그에 해당하는 私有財産이 美軍營內에나 적어도 한국영토內에 存在하지 않는 한 전혀 實益 없는 空文으로 전락할 위험이 적지 않은 것이다.

15) 本條 第9項 (가)는 基本的인 原則을 規定함과 同時에 이들이 한국정부나 한국국민에게 끼친 각종 손해에 대한 만족할만한 배상절차를 구체적으로 規定함으로써, 소위 마리아協定 第3條 第13項에 의해서 한국의 민사재판권 權限로 부터 사실상 면제되어 왔던 이들로 하여금 한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케 하였으며, 公正한 재판을 받을 한국민의 權利를 최대한 보장하였다.

주둔군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영세민인 點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배상액만이라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꼭 必要한 것이다.

2. 公用中이 아닌 경우에 發生한 손해.

公務執行中 發生한 兩國政府에 對한 손해는 그 責任을 相互 相殺하도록 하고 있는 청구권 상쇄제도에 있어 위 손해가 自國이 所有, 使用하는 재산에 對한 손해와 他方當事國이 所有, 使用하는 財產 가운데에서 그것이 公用으로 使用되는 도중에 그 재산으로 因하여 發生되는 손해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點에 관하여 「公用中」의 개념을 規定함에 그 기초가 되는 「公務中」이란 意義를 合意議事錄에서 살펴 보면, 이것은 명백히 미국군대, 군인, 군속이 公務를 집행하는 기간중에 行하는 모든 行위를 포함하는 뜻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그 개인이 집행하는 公務의 성격이 本來的 기능일 것을 要件으로 하고 있어서 極히 限定的인 範圍에 있어서만 公用中이라고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군구성원 또는 미국이 所有, 使用하는 財產이 公務執行中이 아니거나 적어도 公用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이로 因하여 야기되는 손해, 그리고 이와 同一한 處地에 있는 한 국재단에 對해 입힌 손해에 對한 배상처리방법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點은 問題點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第三. 改善論

1. 判決의 執行保障

判決의 執行을 保障할 수 있는 手段, 특히 非公務中の 不法行爲로 因해 發生한 손해의 배상을 확정한 判決의 執行을 保障할 手段이 制度的으로 마련되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手段의 하나로써 提案한다면, 미군당국이 채무보증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代拂하고 以後에 不法行爲者의 장애봉급 및 本國所在 재산에 對해 집행할 수 있는 구상권을 行使하도록 하는 것이다.¹⁶⁾

2. 公用中이 아닌 경우에 發生하는 손해.

이런 종류의 손해에 對한 배상처리 방법에 관해서도 손해의 유형에 따라서 兩

16) 황성수, 한미행정협정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p.80. 友石 文理大·法經大 論文集, 第二輯, 1969年.

國間에 明文化한 制度的 保障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¹⁷⁾ 사실상, 公用中 이냐 아니면 非公用中이냐 하는 것이 사실상 분명치 않은 만큼, 가급적 公用中의 손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부득이 非公用中의 손해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도 公用中의 손해배상에 관한 절차에 準해서 制度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第五章 結 論

本 論文에서는 勞務條項과 刑事裁判權 條項 및 民事請求權 條項을 重點의으로 다루었는데 이들은 本協定 체결시까지 兩國間에 가장 論難이 많았던 部分이기도 하다. 이 세조항 中에서도 특히 勞務條項의 問題點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그 改善論도 가장 상세히 제시하였는데 그 理由는 조약체결후 1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근로자의 勞動權에 對한 의식도 크게 성숙하여 그들에 對한 人間다운 生存權의 保障 없이는 원만한 勞使關係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한미상호방위의 基本目的을 원할히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勞務條項에 있어서는 이 條項의 適用 範圍를 擴張, KSC 團員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부당 해고를 방지하며, 勞動爭議調整에 있어서 조정기간의 신설(한국노동청 조정기간) 또는 단축(70日間의 合同委員會에 의한 강제조정 中의 냉각기간을 20日~30日間 정도로)과 合同委員會에 勞動者代表의 參與 및 合同委員會의 決定에 對한 이의제기方法강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국가비상시에 本條의 適用이 完全排除되게 하는 것보다 비상사태의 종류에 따라 제한의 정도를 具體的 妥當性 있게 할 것이 요구되며 KSC 團員에 對해서도 유해위험작업, 고용계약, 不當勞動行爲 및 勞組設立의 申告制與否 등에 관해 明白히 규정하여 노동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刑事裁判權 條項에 관해서는 한국여행 中의 미군에 對해 本條適用이 있는 경우를 明確히 하고 通常的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과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에 對해 어느 재판권이 미치는지 分明히 하며 미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미군

17) 황성수, 前揭論文, p.80.

國間에 明文化한 制度的 保障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¹⁷⁾ 사실상, 公用中 이냐 아니면 非公用中이냐 하는 것이 사실상 분명치 않은 만큼, 가급적 公用中의 손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부득이 非公用中의 손해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도 公用中의 손해배상에 관한 절차에 準해서 制度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第五章 結 論

本 論文에서는 勞務條項과 刑事裁判權 條項 및 民事請求權 條項을 重點의으로 다루었는데 이들은 本協定 체결시까지 兩國間에 가장 論難이 많았던 部分이기도 하다. 이 세조항 中에서도 특히 勞務條項의 問題點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그 改善論도 가장 상세히 제시하였는데 그 理由는 조약체결후 1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근로자의 勞動權에 對한 의식도 크게 성숙하여 그들에 對한 人間다운 生存權의 保障 없이는 원만한 勞使關係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한미상호방위의 基本目的을 원할히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勞務條項에 있어서는 이 條項의 適用 範圍를 擴張, KSC 團員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부당 해고를 방지하며, 勞動爭議調整에 있어서 조정기간의 신설(한국노동청 조정기간) 또는 단축(70日間의 合同委員會에 의한 강제조정 中의 냉각기간을 20日~30日間 정도로)과 合同委員會에 勞動者代表의 參與 및 合同委員會의 決定에 對한 이의제기方法강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국가비상시에 本條의 適用이 完全排除되게 하는 것보다 비상사태의 종류에 따라 제한의 정도를 具體的 妥當性 있게 할 것이 요구되며 KSC 團員에 對해서도 유해위험작업, 고용계약, 不當勞動行爲 및 勞組設立의 申告制與否 등에 관해 明白히 규정하여 노동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刑事裁判權 條項에 관해서는 한국여행 中의 미군에 對해 本條適用이 있는 경우를 明確히 하고 通常的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과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에 對해 어느 재판권이 미치는지 分明히 하며 미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미군

17) 황성수, 前揭論文, p.80.

의 한국인 아내에 대해서도 어느 재판권이 복종할 것인지에 관해 明文規定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美國의 安全에 對한 犯罪 中에서 미국의 第1次的 재판권이 미치는 경우와 전속적 재판권이 미치는 경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民事請求權 條項에 있어서는 判決의 執行을 保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군당국이 채무보증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배상하고 후에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또한 公用中이 아닌 경우에 發生하는 손해에 對해서도 公用中 發生한 손해배상절차에 준하여 구제되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必要하다고 본다.

互惠平等의 한·미 兩主權國家 사이에서 相互間의 國權과 市民 個個人의 人權을 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對共防衛라는 共同目標을 效率의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시된 몇가지 問題點과 改善論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 外務部, 한미행정협정 해설 및 협정문, 동아출판사, 196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Fides, 1967.2(通券 13號)
황성수, 한미행정협정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友石 文理大·法經大 論文集, 第二輯, 1969年.
治安局, 警察統計年報, 1962.1966.1971-1973, 治安本部, 警察統計年報, 1974-1984.
檢察廳,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事件處理요령, 1969.8.22字公文(法檢察, 821-9059)
金哲洙, 新憲法學概論, 博英社, 1981.
權寧星, 憲法學原論, 法文社, 1984.
李漢基, 國際法學, 博英社, 1973.
金致善, 韓美行政協定과 勞務條項研究, Fides. 1967.2
國會圖書館, 美國이 체결한 行政協定 例(上)·(下), 大韓公論社, 서울, 1964.
外務部, 條約係

의 한국인 아내에 대해서도 어느 재판권이 복종할 것인지에 관해 明文規定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美國의 安全에 對한 犯罪 中에서 미국의 第1次的 재판권이 미치는 경우와 전속적 재판권이 미치는 경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民事請求權 條項에 있어서는 判決의 執行을 保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군당국이 채무보증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배상하고 후에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또한 公用中이 아닌 경우에 發生하는 손해에 對해서도 公用中 發生한 손해배상절차에 준하여 구제되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必要하다고 본다.

互惠平等의 한·미 兩主權國家 사이에서 相互間의 國權과 市民 個個人의 人權을 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對共防衛라는 共同目標을 效率的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시된 몇가지 問題點과 改善論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 外務部, 한미행정협정 해설 및 협정문, 동아출판사, 196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Fides, 1967.2(通券 13號)
황성수, 한미행정협정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友石 文理大·法經大 論文集, 第二輯, 1969年.
治安局, 警察統計年報, 1962.1966.1971-1973, 治安本部, 警察統計年報, 1974-1984.
檢察廳,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事件處理요령, 1969.8.22字公文(法檢察, 821-9059)
金哲洙, 新憲法學概論, 博英社, 1981.
權寧星, 憲法學原論, 法文社, 1984.
李漢基, 國際法學, 博英社, 1973.
金致善, 韓美行政協定과 勞務條項研究, Fides. 1967.2
國會圖書館, 美國이 체결한 行政協定 例(上)·(下), 大韓公論社, 서울, 1964.
外務部, 條約係

外務部, 外交問題研究叢書

Edwin G. Schuck : Concurrent Jurisdiction under the NATO Status of Forces Agreement, Columbia Law Review, March, 1957.

Department of Justice : International Law and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Supplementary Hearings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83rd Cong, 1st Sess. 38.1953.

內 容 要 約

1953年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 第4條에 따라 1966年 체결된 SOFA規定上的 問題點과 改善論을 勞務條項(第17條), 刑事裁判權 條項(第22條) 및 民事請求權 條項(第23條)에 한해서 記述하였다.

勞務條項에 관해서는 피고용인의 生存權保護를 통한 能率向上을 期하는 方向에서 여러 가지 問題點을 지적하고 改善策을 제시하였고, 刑事裁判權 條項에 관해서는 裁判權의 귀속을 분명히 하는 觀點에서 問題點과 개선책을 기술하였다. 또한 民事請求權 條項에 관해서는 被害者의 權利救濟를 擴大하고 實效性 있게 하기 위한 方案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Problems and Suggestions of SOFA =

This thesis is described about problems and suggestions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which was concluded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in 1966 according to Article IV of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ROK and USA.

But, this thesis is described not about problems and suggestions of all articles of SOFA, but about problems and suggestions of Article XVII (labor), XXII (criminal jurisdiction), XXIII (civil right of claim).

Protection of Korean employee (in connection with Article XVII of SOFA), sharp distinction of criminal jurisdiction between the Korean court and the US Army court (in connection with Article XXII of SOFA) and guarantee of recovering indemnities (in connection with Article XXIII of SOFA) are emphasized especially in this thesis.

警察豫算에 관한 연구

—豫算執行의 伸縮性을 中心으로—

崔 榮 一
(行政學科·副教授)

目 次	次
I. 序	다. 移替의 概念
II. 豫算의 伸縮性	라. 移替의 節次
1. 豫備費	마. 移用 및 移替의 比率
가. 豫備費의 概念	4. 移 越
나. 豫備費의 使用節次	가. 移越의 概念
다. 豫備費의 比率	나. 移越의 節次
2. 轉 用	다. 移越의 比率
가. 轉用의 概念	5. 不用額
나. 轉用의 節次	가. 不用額의 概念
다. 轉用의 比率	나. 不用額의 比率
3. 移用 및 移替	III. 要約 및 結論
가. 移用의 概念	參考文獻
나. 移用의 節次	

I. 序

Wagner 에 依하면 經濟의 成長에 따른 行政서비스 等の 增大는 政府의 역할을 증가시키고 이는 政府豫算規模의 擴大를 招來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50年代는 主로 國防費의 增大와 1960年 및 1970年代에는 經濟成長을 촉진하기 위한 經濟開發資金, 1980年代에는 國民福祉의 增進을 위한 福祉財政의 增加가 政府豫算規模의 擴大를 가져온 主된 要因이며 이에 따라